

감 사 원

통 록 보

제 목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관 임기조항에 대한 법령해석 부적

정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롭

1. 업무 개요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2015. 1. 1. 개정된 같은 법 제67조 제5항 등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령해석 업무를 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임용 등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국세기본법」(법률 제12162호, 2014. 1. 1.,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 만 연임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동일인이 장기간 조세심판관의 직위에 있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증임²⁾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법률 제12848호, 2015. 1. 1. 일부개정)(이하 “개정된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5항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정된 법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인 자는 「국세기본법」 제67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67조 제5항 및 부칙 제1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는 2015. 1. 1. 당시 조세심판관인 자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조세심판관이 아닌 자는 한 차례만 증임할 수 있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국무조정실 소속 C(일반직 고위공무원)은 2011. 10. 24. 조세심판관의 직위에 임명되어 3년간 근무한 후 2014. 10. 23.자로 1차 임기를 마치고, 2014. 10. 24.자로 증임되어 조세심판관으로 근무하다 2014. 12. 22. 부처 간 인사교류에 의해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어 근무하다 2015. 12. 21.)으로 인사발령되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C의 복귀에 앞서 2015. 11. 6.과 2016. 3. 4.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C를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련 법규의 해석사항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16. 4. 8. 인사혁신처로부터 “C은 조세심판관 직위에서 국무조정실로 전보되었으므로 조

2) 증임: 연속 여부에 불구하고 먼저 근무하던 직위를 다시 맡는 일

1) 연임: 원래 장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서 그 직위에 머무는 일

제심판관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인사교류의 규정 및 취지와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해 볼 때, 인사교류자가 인사교류시점에서 교류종료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회신받은 후 같은 해 4. 14. 기획재정부에 다시 C이 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해 주도록 질의하였다.

한편, C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된 2015. 1. 1.에는 국세청 ▽국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었고, 인사혁신처 의견(2016. 4. 8.)과 같이 조세심판관으로서의 중임 임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14조에서 연임을 보장하는 “조세심판관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C이 인사교류에 동의한 것을 조세심판관 직에 대한 사임의사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C이 인사교류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권리와 기대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관의 직위로 복귀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경우 정부 권장 정책인 인사교류에 적극 참여한 자의 권익을 덜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사유로 2016. 4. 21. C은 “조세심판관인 자”에 준하여 개정된 「국세기본법」 경과규정이 적용된다는 법령해석4을 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6. 4. 25. 국무조정실에 위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하였고, 국무조정실은 2016. 5. 6. C을 조세심판관으로 임용하였다.

그 결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67조 제5항 및 부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없었던 C이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에 의해

3) C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48조 및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28호) 제57조의7 등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 후 원소속기관인 국무조정실로의 복귀는 가능

4)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건을 상정하였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2016. 4. 21. C은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된다고 의견

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경과조항에 대해 견해가 대립된 상황에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부의하였던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문언이 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에 대하여는 최대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문언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법령해석을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기획재정부의 추가 해석이 있다면 그 취지에 따라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C은 당시 심판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인사교류에 응했고, 인사교류 후 심판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신뢰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에 C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법령해석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가진 조세심판관으로서의 복귀에 대한 기대보다 정당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격요건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2015. 1. 1. 법 시행 당시의 조세심판관이므로 국무조정실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직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조세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없었던 C이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에 의해 임용된 문제가 있어 이를 통보하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례 보

제 목 외부강의 등 미신고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및 부무관리 부

적정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1. 업무 개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¹⁾,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와 「국무조정실 공무원 행동강령」(2013. 10. 21. 국무조정실) 제18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2012. 10. 25. 국민권익위원회) 제20조,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직원의 대외활동요령」(1990. 2.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5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2009. 4.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이 외부 강의나 용역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무 기관으로서 총 2회에 걸쳐 외부강의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외부강의 등 미신고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및 「국무조정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심사, 평가, 자문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²⁾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직원의 대외활동요령」 제5조 및 「외부집필활동에 따른 처리절차 및 기준」(2014. 7.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소속 직원의 강의 및 강연을 포함한 모든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소속 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학, 단체, 업체 등의 외부기관(이하 “신고대상 외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강의 등의 수행 일시, 대가 등을 각각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거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6. 11. 14.~12. 8.) 중 2014. 1. 1.부터 2015.

2) 「국무조정실 및 부무관리비서실 위임권결규정」(2013. 4. 3. 국무조정실) 제4조 제항 및 제2항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권결규정」(2013. 12. 20. 국민권익위원회)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부강의의 신고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감사담당관에게 위임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12. 31.까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직원의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무조정실의 경우 ㉓실 소속 >팀장 D은 15회에 걸쳐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고 계 4,637,600원을 수령하였는데도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등 [별표 1]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14명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계 32건의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여 계 9,047,600원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과 소속 D은 8회에 걸쳐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고 계 3,350,000원을 수령하였는데도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등 [별표 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5명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계 14건의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여 계 5,600,000원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 F은 18회에 걸쳐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고 계 22,689,710원을 수령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별표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직원 11명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계 50건의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여 계 55,232,660원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는 등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나. 임직원 행동강령 미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권고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2013. 9. 25.)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되,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맞게 내부규정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소속 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직유관단체, 학술 및 연구단체에 외부강의 등을 실시할 경우 연구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2009. 4. 2.)을 2016년 11월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과 같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직원 20명이 위 표준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게 신고해야 할 공직유관단체, 학술 및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외부강의 등 계 357건을 신고하지 않은 채 강의로 등으로 계 449,053,060원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그 결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맞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지 않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소속 직원들의 외부 강의 등 활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는 등 소속 직원의 외부 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외부강의 등 신고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교육 및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하는 등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기준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위 표준안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 사전 결재나 신고 없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별표 1]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 미신고 현황

(단위: 원)

성명(직급)	부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기금액
G	-	1	-	14. 9. 29.	발표	400,000
				소계(1건)		400,000
H	-	2	-	14. 2. 13.	토론	200,000
				소계(1건)		200,000
I	-	3	-	14. 5. 29.	강의	200,000
				소계(1건)		200,000
J	-	4	-	15. 11. 6.	강의	210,000
				소계(1건)		210,000
K	-	5	-	15. 4. 24.	강의	300,000
				소계(1건)		300,000
L	-	6	-	14. 3. 20.	평가	200,000
		7	-	14. 9. 23.	강의	500,000
		8	-	15. 4. 14.	평가	300,000
합계(총 14명, 36건)						4,687,600
소계(16건)						9,047,600

성명(직급)	부서	연번	요청자	수행일자	활동종류	대기금액
M	-	9	-	15. 10. 26.	지문	200,000
				소계(4건)		1,200,000
N	-	10	-	15. 9. 4.	취원회 참석	200,000
				소계(1건)		200,000
O	-	11	-	14. 10. 30.	기문	200,000
				소계(1건)		200,000
P	-	12	-	14. 1. 7.	평가	300,000
		13	-	14. 2. 21.	평가	200,000
				소계(2건)		400,000
F	-	14	-	15. 2. 10.	토론	300,000
				소계(1건)		300,000
G	-	15	-	15. 11. 25.	강의	300,000
				소계(1건)		300,000
F	-	16	-	15. 2. 24.	토론	300,000
				소계(1건)		300,000
S	-	17	-	14. 11. 6.	심사	200,000
				소계(1건)		200,000
D	-	18	-	14. 4. 24.	강의	313,600
		19	-	14. 7. 7.	강의	220,000
		20	-	15. 5. 6.	강의	350,000
		21	-	15. 5. 7.	강의	250,000
		22	-	15. 5. 12.	강의	300,000
		23	-	15. 5. 13.	강의	313,600
		24	-	15. 5. 20.	강의	300,000
		25	-	15. 5. 27.	강의	300,000
		26	-	15. 6. 15.	강의	300,000
		27	-	15. 6. 15.	연임위원	300,000
		28	-	15. 6. 22.	강의	400,000
		29	-	15. 7. 6.	강의	220,000
30	-	15. 10. 16.	강의	360,000		
31	-	15. 12. 10.	강의	500,000		
32	-	15. 12. 14.	강의	280,000		
합계(총 14명, 36건)						4,687,600
소계(16건)						9,047,600

주: 대항기간 2014. 1. 1. ~ 2015. 12. 31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별표 1]에 기재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 ② 앞으로 소속 직원이 사전 결재나 신고 없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동보)

감사원

주요요구

제목 특근매식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관 형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국무조정실

내용

1. 업무개요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은 매년 특근매식비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무개시 2시간 전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1인당 6,000원 이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고관리법」 제24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 제2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해야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자가 카드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직원이 2시간 이상 특근한 경우에만 특근매식비를 집행하고, 실제 사용자가 카드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특근매식비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6. 11. 14.~12. 8.) 중 국무조정실 ◎◎실 등 4개 부서¹⁾ 및 조세심판원의 2015년도²⁾ 특근매식비 집행내역³⁾을 확인해 본 결과, [표 1]과 같이 국무조정실 ◎◎실 등 4개 부서와 조세심판원은 정부세종청사 내에 입주한 구내식당 주식회사 ●에서 계 228,233,200원 상당의 식권을 매월 정기적으로 일괄 구매하여 별도 식권 관리대장 등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일정 매수⁴⁾의 식권을 나누어 줄으로써 실제 직원들이 식권을 특근매식에 집행하였는지 아니면 점심 등에 집행하였는지를 알 수 없도록 집행하였다.

[표 1] 실제 특근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현황(2015년)

부서	집행액 (A)	실제 특근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집행한 내역		집행 비율 (C=B/A)
		구내식당 식권 일괄 구매	정사 인당 식당 장부 결제	
국무조정실	67,240,000	30,550,000	35,690,000	50%
국무조정실	87,115,720	58,632,700	40,583,300	66%
국무조정실	80,887,000	37,940,000	40,947,000	50%
국무조정실	80,880,000	35,558,000	50,622,500	63%
조세심판원	150,005,500	64,100,500	58,633,500	43%
계	477,138,500	226,833,500	236,194,300	49%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1) ◎◎실, 식, ◎◎실, 심
 2) 2016년에도 2015년과 동일하게 식권을 일괄 구매하여 나눠 주고, 정사 주변 식당에 정부를 비치하여 수시로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특근매식비를 집행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는 ◎◎실 등 4개 부서 및 조세심판원의 2015년 특근매식비 집행 현황을 표본조사하였음
 3) 2015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체 특근매식비 집행액 1,063백만 원 중 471백만 원(44%)을 집행
 4) 통상 1인당 월별 15배 내외
 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시간 이상 특근 후 집행하기도 하고, 규정을 위배하여 점심, 간식, 2시간 미만 특근 후 집행하기도 하는 등 혼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그 금액을 각각 명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움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규정과 달리 특근매식비를 점심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쿠키 등을 지급⁸⁾하고, 기타운영비(210-16목)로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을 집행⁹⁾하면서도 2015. 12. 29. '2015년 조세심판원 진 직원 성과보표 달성 포상'이라는 명목¹⁰⁾으로 진 직원 117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해피머니 상품권을 관통하게 배부하면서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계 5,791,500원을 집행하는 등 [표 3]과 같이 2014년과 2015년에 업무추진비 계 11,385,000원을 예산 목적 외로 집행하였다.

[표 3] 업무추진비 목적 외 집행 명세

구분	시점연차	집행 명목	집행 내용	금액	비고
2014년	2014. 12. 30	2014년 진 직원 성과보표 달성 포상	진 직원 117명에게 500,000원 상당 상품권 지급	5,963,500	상년전 비중 5,500,000원 별도 집행
	2015. 12. 28	2015년 진 직원 성과보표 달성 포상	진 직원 117명에게 500,000원 상당 상품권 지급	5,791,500	상년전 비중 7,000,000원 별도 집행
계	-	-	-	11,385,000	-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특근매식비와 업무추진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기본경비-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운영비-복리후생비 예산에 1직원 1기월인 축하선물로 1인당 50,000원을 위상하여 직원 선배에 따라 커피, 쿠키 등을 지급하고 있음
 9) 기본경비-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운영비-기타운영비 예산으로 2015년 1월 및 같은 해 7월에 직원 업무 유감 포상으로 각각 1,400,000원 계 2,800,000원을 집행하는 등 매년 우수 직원 및 부서 격려금을 집행하고 있음
 10) 2015년 조세심판원 성과지표로 사각지대비율 목표지표 75.0%로 설정한 후 78.6%를 달성하여 진 직원 포상을 하였고 하나, 2015년 목표치율 2011년 목표치 75.0%와 동일하게 설정한 점, 2011년 이후 4년간 평균 실적치가 77.7%(2011년 77.3%, 2012년 77.8%, 2013년 75.2%, 2014년 80.4%)인 점을 감안할 경우 기관 전체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전 직원 포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명분은 낮음

감사원

주요 구

제 목 특근매식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형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조세심판원

내 료

1. 업무 개요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은 매년 특근매식비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무개시 2시간 전
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
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1인당 6,000원 이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
다.

또한 「국고관리법」 제24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
재정부) 제2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집행해야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자가 카드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직원이 2시간 이상 특근한 경우에만 특근
매식비를 집행하고, 실제 사용자가 카드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특근매식비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6. 11. 14.~12. 8.) 중 국무조정실 ◎◎실
등 4개 부서¹⁾ 및 조세심판원의 2015년도²⁾ 특근매식비 집행내역³⁾을 확인해 본 결
과, [표 1]과 같이 국무조정실 ◎◎실 등 4개 부서와 조세심판원은 정부세종청사
내에 입주한 구내식당 주식회사 ●●에서 계 228,233,200원 상당의 식권을 매월
정기적으로 일괄 구매하여 별도 식권 관리대장 등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채 직원
들에게 일정 매수⁴⁾의 식권을 나누어 줌으로써 실제 직원들이 식권을 특근매식
에 집행하였는지 아니면 점심 등에 집행하였는지를 알 수 없도록 집행⁵⁾하였다.

[표 1] 실제 특근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현황(2015년)

부서	집행액 (A)	실제 특근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집행한 내역		집행 비율 (C=B/A)
		구내식당 식권 일괄 구매	정사 인산 식당 정부 결제	
국무 조정실	66,240,000	39,599,000	35,650,000	100
	47,115,720	36,632,700	40,353,300	98.9
조세심 판원	30,837,000	37,940,000	40,837,000	97.5
	30,830,000	35,539,000	30,622,500	99.2
조세심판원 계	159,075,000	24,531,500	55,651,500	35.0
	471,145,500	228,233,200	242,159,500	97.7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1) ◎◎실, ◎◎실, ◎◎실, 실
- 2) 2015년도 2015년과 동일하게 식권을 일괄 구매하여 나눠 주고, 정사 주변 식당에 정부를 비치하여 수시로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특근매식비를 집행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는 ◎◎실 등 4개 부서 및 조세심판원의 2015년
특근매식비 집행 현황을 표본조사하였음
- 3) 2015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체 특근매식비 집행액 1,063백만 원 중 471백만 원(44%)을 집행
- 4) 통상 1인당 월별 15배 내외
- 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시간 이상 특근 후 집행하기도 하고, 규정을
위배하여 점심, 간식, 2시간 미만 특근 후 집행하기도 하는 등 혼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그 금액을 각각 명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움

단위: 원

부키 등을 지급⁹⁾하고, 기타운영비(210-16목)로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을 집행⁹⁾하면서도 2015. 12. 29. '2015년 조세심판원 전 직원 성과표 달성 포상'이라는 명목¹⁰⁾으로 전 직원 117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해피머니 상품권을 균등하게 배부하면서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계 5,791,500원을 집행하는 등 [표 3]과 같이 2014년과 2015년에 업무추진비 계 11,385,000원을 예산 목적 외로 집행하였다.

[표 3] 업무추진비 목적 외 집행 명세

(단위: 원)

구분	시점연월	집행 명목	집행 내용	금액	비고
2014년	2014. 12. 30	2014년 전 직원 성과표 달성 포상	전 직원(117명)에게 50,000원 상당 상품권 지급	5,562,500	솔보회 비용 5,900,000원 별도 집행
			2015년 전 직원 성과표 달성 포상	전 직원(117명)에게 50,000원 상당 상품권 지급	5,791,500
계	-	-	-	11,385,000	-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특근매식비의 업무추진비를 「예산 및 기금유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예산 및 기금유용계획 집행지침」 등

- 8) 기본경비-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운영비-복리후생비 예산에 1직원 1기별인 축하선물로 1인당 50,000원을 편성하여 직원 선배에 따라 제의, 부키 등을 지급하고 있음
- 9) 기본경비-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운영비-기타운영비 예산으로 2015년 1월 및 같은 해 7월에 직원 업무 유공 포상으로 각각 1,400,000원 계 2,800,000원을 집행하는 등 매년 우수 직원 및 부서 격려금을 집행하고 있음
- 10) 2015년 조세심판원 성과지표로 시간차리비용 목표치를 75.0%로 설정한 후 78.6%를 달성하여 전 직원 포상을 하였고 하나, 2015년 목표치를 2011년 목표치 75.0%와 동일하게 설정한 점, 2011년 이후 4년간 평균 실적치가 77.7%(2011년 77.3%, 2012년 77.8%, 2013년 75.2%, 2014년 80.4%)인 점을 감안할 경우 기관 전체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전 직원 포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명분은 낮음

의 규정과 달리 특근매식비를 점심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업무추진비를 예산 목적 외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비정규직 직원용 관사 취득 업무 부정적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1. 업무 개요

국무조정실은 2012. 6. 7. 장차관용 관사 임차 비용 명목으로 예비비 9억 원을 배정받아 5억 1천만 원을 집행하고, 2012. 11. 28. 집행 잔액 3억 9천만 원으로 비정규직 직원용 관사 14개를 임차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이나 다른 비목으로 이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예비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불용 처리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관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장차관용 관사 3개를 임차하기 위해, 정부청사시설기준에 따른 장관급 주거시설 크기(198㎡)와 차관급 주거시설 크기(165㎡)를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인근 대전광역시외 아파트 시세(1㎡당 1,731천 원)를 근거로 장차관용 관사 임차비용 913,968,000원을 산출1) 하였고, 2012. 5. 7.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배정을 신청하여 2012. 6. 8. 예비비 9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부청사시설기준에 해당하는 크기의 장차관급 주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2012. 10. 8. 국무조정실장, 국무1차장, 2012. 11. 22. 국무2차장의 관사2)를 임차하여 계 5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9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은 「국가재정법」 제45조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위 집행 잔액 3억 9천만 원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집행 잔액 3억 9천만 원을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 비정규직 직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들에게 거주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별표」 “비정규직 직원용 관사 현황”과 같이 2012. 11. 28. 관사 14개를 임차하는 데 집행하였다.

1) 산출내역(913,968,000원)

- 장관급(1명): 198㎡×1명×1,731천원 = 342,738천 원
- 차관급(2명): 165㎡×1명×1,731천원 = 571,230천 원

2) 차관급 관사 현황 - 도로명 주소

관사이용자	건물면적	보증금	주소
국무조정실장	113.98㎡	1억 6천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기호아파트 7구
국무1차장	114.24㎡	1억 7천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기호아파트 7구
국무2차장	113.98㎡	1억 6천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기호아파트 7구

더욱이 2016. 11. 30. 현재 위 관사 14개 중 8개는 비정규직 직원이 거주하고 있고, 6개는 [표]와 같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가량 거주하는 직원이 없어 비어 있는 상태이다.

[표] 비정규직 직원용 관사 공실 현황

연번	호수	공실 시기
1	1호	2016. 10. 31.부터 같은 해 11. 30. 현재까지
2	2호	2016. 7. 31.부터 같은 해 11. 30. 현재까지
3	3호	2016. 3. 30.부터 같은 해 11. 30. 현재까지
4	4호	2016. 1. 17.부터 같은 해 11. 30. 현재까지
5	5호	2016. 5. 16.부터 같은 해 11. 30. 현재까지
6	6호	2015. 12. 15.부터 2016. 11. 30. 현재까지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국무조정실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예비비를 집행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국무조정실은 14개의 비정규직 직원용 관사 중 기준에 비어 있던 6개의 관사와 감사기간 이후 추가로 공실이 발생한 2개의 관사(2호, 3호)를 포함한 총 8개 관사의 계약을 2016. 12. 2. 해지하고 계약해지로 발생한 보증금 222,000,000원은 2016. 12. 15. 국고로 반납처리하였으며, 현재 비정규직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6개의 관사도 2017년 상반기 안에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보증금 168,000,000원을 국고에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별표]

비정규직 직원용 관사 현황

(단위: 만 원, m²)

연번	주소	임차계약 해지여부	보증금	국고반납 금액	건용면적
1	서울특별시 - -동 -호	X	2,800	-	14.07
2	- -호	X	2,800	-	15.51
3	- -호	O	2,800	2,800	14.88
4	- -호	O	2,800	2,800	14.07
5	- -호	X	2,800	-	15.51
6	- -호	O	2,800	2,800	21.40
7	- -호	X	2,800	-	15.51
8	- -호	X	2,800	-	14.56
9	서울특별시 - -동 -호	O	2,800	2,800	18.29
10	- -호	X	2,800	-	18.76
11	- -호	O	2,800	2,800	18.96
12	- -호	O	2,800	2,800	17.80
13	- -호	O	2,800	2,800	18.29
14	- -호	O	2,600	2,600	17.80
	합계		39,000	22,200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 ①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여 취득한 [별표] “비정규직 직원용 관사 현황”에 기재된 14개의 관사 중 임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6개 관사의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보증금 168,000,000원을 국고에 반납하며
- ② 앞으로 예산 집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